

규정심의위원회 규정

규정 · 소관 미지정 · 현행 규정

개정 2026. 8. 31. · 시행 2026. 9. 1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48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1:36:42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제규정의 체계적인 검토와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본교 규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책임과 권한)

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회 회무 총괄
2.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
3. 간사 임명

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의자료 준비
2. 회의록 작성 및 보고

제4조(위원회 구성)

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(위원장), 기획팀장(서기), 총무인사팀장, 학사지원팀장, 학생복지팀장, 연구산학팀장, 교수(5), 예산팀장,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.

〈개정 2014-09-01〉

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규정의 제·개정
2. 규정 검토, 심의 및 안건 상정 (개정 2016-02-29)

제6조(의결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
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심의절차)

① 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②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록 정리 및 보고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.

제10조(경비)

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

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기록관리 및 관련법령)

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에 따르며, 관련법령으로는 삼육대학교 법제 업무 관리규정이 있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